

직업기술교육 협약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년 11월 10일 파리
제 2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직업기술교육 협약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2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교육증진과 발전은 유네스코의 헌장이 정한 의무임을 *상기하고*,

또한 일하는 권리와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 세계인권선언 제 23조와 26조에 명시된 원칙과,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채택된 교육상 차별금지 협약, 1966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채택된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관한 모든 차별철폐협약의 포함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이 국가간의 평화와 우호적인 이해를 지키는 데에 기여를 해야함을 *인정하고*,

직업기술교육의 개정 권고와 1974년 제 18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유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규정들을 *주목하고*,

1976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성인교육발전에 관한 권고와 1966년 특별정부간 위원회에서 채택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또한 *주목하고*,

세계교육회의의 관련 권고를 *고려하여*,

1975년 제 16차 국제노동기구회의에서 채택된 인력개발의 직업안내와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No. 142)과 권고 (No. 150)의 규정들을 *유념하고*,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가 각각의 해당규약문서를 초안하고 결과로 좋은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사안에 있어 가져야 할 긴밀한 협력을 또한 *주목하고*,

여성과 소녀의 직업기술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고려하고*,

교육체제와 사회경제, 문화적 여건의 다양성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건들에, 특별히 *유념하며*,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유사한 목표들이 추구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직업기술교육에서 공통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속도가 젊은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확대와 개선의 필요를 상당히 증가시켰음을 인정하고

직업기술교육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구적 목표를 충족함을 인정하고,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서 정보와 경험의 교류에 대한 필요와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강화가 바람직함을 확신하고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법적 규정문서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1989년 11월 10일 동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조

체약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가) 본 협약의 적용상, '직업기술교육'은 일반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및 관련과학의 연구, 경제, 사회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실제적 기술, 전문지식, 태도 및 이해의 습득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나) 본 협약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또 한편으로는 교육기관과 산업적, 농업적, 상업적 또는 직업세계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이 공동으로 조직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형태와 수준의 직업기술교육에 적용된다;

(다)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의 헌법 규정과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제 2 조

1. 체약국은, 개인 자신의 문화적 성취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인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국의 교육체계 안에서 필요와 자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규정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동의한다.

2.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틀은 적절한 법률과 다음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협약 가입국에서 결정된다:

(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직업기술 영역에서 달성되어야 할 목표들과 개인들 자신의 성취;

(나) 특히 프로그램의 수평적, 수직적 연결성과 관련하여 직업기술교육과 또 다른 형태들의 교육과의 관련성;

(다) 책임 당국이 규정한 직업기술교육의 행정기구를 위한 구조;

(라) 다양한 경제부문 및 직업협회, 노동자, 고용주 및 그 밖의 관련당사자들의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대한 책임을 가진 공공기관의 역할;

3. 체약국은 직업기술교육에 들어맞는 교육수준을 획득한 그 어떠한 개인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가적, 사회적 배경, 정치적 또는 또 다른 의견, 경제적 지위, 출생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다른 근거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체약국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과 학습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체약국은 장애인과 그 밖의 불이익집단의 특별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집단이 직업기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조

1. 체약국은 다음을 고려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발하는 데 동의한다:

(가) 당사자들의 교육, 문화, 사회 배경과 이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열망;

(나)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필요한 공학적, 전문적 기술, 지식, 자격수준 그리고 기대되는 기술적, 구조적 변화;

(다)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서의 고용기회와 발전전망;

(라)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호;

(마)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

2. 직업기술교육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유연하고 열린 구조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다음의 것을 제공한다:

(가) 일반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과 직업세계의 소개;

(나) 교육, 직업 지도 및 정보, 적성 상담;

(다)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숙련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지식의 개발;

(라) 전직, 직업자격 개선, 지식, 기술, 이해의 갱신에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초;

(마) 직업기술교육 기관 내외에서 현직 형태 내지 또 다른 형태의 초기 직업기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적 일반교육;

(바)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또는 고용구조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지식이 쓸모 없게 된 사람들과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자격을 보충하고 갱신할 뿐 아니라 특히 재훈련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과 연수과정.

3.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직업부문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일반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관련직업에 적합한 사회, 경제, 환경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4. 체약국은 직업기술교육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들 외부의 사업에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5. 각 직업수준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가능하면 명백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변화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갱신되어야 한다.

6.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직업기술교육에서 적절한 보상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기술분야의 이론적, 실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은 연수를 받은 사람과 직업고용의 경험을 겪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4 조

체약국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문화적 진보에 그리고,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변화하는 고용상의 요구에 부단히 적응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응용함에 있어 교육상의 연구와 혁신에서 일어나는 진전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직업기술교육의 구조, 연구 프로그램, 계획, 연수방법, 연수자료뿐만 아니라 학교체계와 직업세계 사이의 협력형태들을 재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제 5 조

1. 체약국은, 전일제와 시간제를 불문하고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적합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형태와 수준에 일치하는 적절한 교수기법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2. 직업기술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기업체 및 직업세계와 접촉이 있는 또 다른 조직체 안에서의 특별과정이나 실용적인 연수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정보, 지식, 기술을 갱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특별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혁신들에 관한 정보와 연수를 제공받아야 하고, 적절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3. 직업기술교육 교사와 그 밖의 별정직 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고용조건은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도하고 임용하며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6 조

국제협력을 진작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가) 직업기술교육에서 혁신, 발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교사연수 프로그램, 방법, 설비표준 및 교과서에

대한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한다;

(나) 산업, 상업 및 그 밖의 경제부문에서 적용되는 국제기술표준을 직업기술교육에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다) 직업기술교육으로 획득한 자격의 등가성 승인을 위한 접근들을 장려한다;

(라) 직업기술교육에서 교사, 행정가, 전문가들의 국제교류를 촉진한다;

(마) 특히 기술의 연구, 습득, 채택, 전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체약국의 기관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 국가적 기술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 사이의,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직업기술교육 협력을 추진한다;

(사) 직업기술교육의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